

성고문 사건 조사결과 발표

본 협회는 1986. 7. 7.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찰의 권양에 대한 성고문 사건"을 조사해 하였던 바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다 음

1. 권양(권ㅇㅇ)은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4학년 재학중 1985. 7. 경 제적된 뒤, 1986. 5. 20. 부천시에 있는(주) 성심 공원으로 외장취업하였다가 그 사실이 탄로날까 두려워서 같은달 28일 자진하여 퇴직한 여자로서, 1986. 6. 4. 외장취업시 공문서(주민등록증)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부천경찰서에 연행되어 구속 수사를 받고,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공소 제기를 당하여 현재 인천 소년고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공판대기중에 있는 사람임.
2. 위 조사위원(변호사 김춘봉, 변정수, 하경철, 강철선)들은 1986. 7. 8. 15:15 - 16:15경까지 사이 인천소년고도소 보안과장실에서 성고문을 당하였다는 피구속자 권양을 접견하고, 권양에게 권양의 사선번호인 9명이 작성한 고발장을 제시하여 읽게하고 그 고발내용이 사실이냐고 물었던바,
 - 가) 권양은 1986. 6. 4. 부천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사실인 공문서 위조 사실에 대하여 모두 순순히 자백을 하였는데도 " 5. 3. 인천사제로 수배된 자들중 아는

사람과 그들의 행방을 데라" 고 추궁 하여 "모른다"고 했더니
문귀동형사가 고발장에 기재된 고발내용과 같이

가) 1986. 6. 6. 04:30 - 06:30 까지 1층 조사실에서 "나는
5. 3. 사태때 여자만 다루었다. 그 때 모두 아랫도리를
벗겨서 책상위에 올려 놓으니까 다 불더라, 네 자궁에
봉을 집어 넣어야만 불겠느냐"고 협박하고, 바지 단추와
지퍼를 강제로 풀어 밑으로 내리고, 브레지어를 들추어
밀어 올리면서 "너 처녀냐, 자외행위를 해 본적이
있느냐, 젖가슴을 보니 처녀 같지 않다" 라고 '모욕적인
말을 해대며, 옆에 있는 형사에게 "고추가루물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는 등 겁을 주고는 책상위에 올라서게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고

나) 1986. 6. 7. 21:00 경에는 1층 수사과 조사실에서
형사 2명으로 하여금 권양의 양팔을 등 뒤로 하여 수갑을
채우게 하고 무릎을 꿇어 앉게 한뒤, 양 무릎사이로
각목을 끼워 넣고 다리와 허리등을 짓밟게 하고 "너
같은년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협박
하여 권양을 기진맥진하게 한뒤, 형사 2명을 네 보네고
그 옆에 있는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서 21:30 - 23:00
까지 단독으로 권양의 브레지어를 풀어 위로 올리고
바지를 풀어 지퍼를 내린뒤 국부에 손을 대고, 팬티마저
벗기고는 젖가슴을 만지며 자기의 묶음 권양의 묶음에 대고
비벼 대다가 자신은 의자에 앉고 권양을 바로 앞에 꿇어
앉게하여 자신의 성기를 바라보게 하고, 권양의 얼굴을
앞으로 잡아 당겨 권양의 입이 자신의 성기에 닿도록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권양의 입에 넣고 하다가
권양의 상반신을 책상위에 얹드리게 하고 그 등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권양의 곡부에 넣고 미는 등 강제추행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여서

- 나) 위 조사위원들은 권양에게 "위 고발장에 적힌 성고문 행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 없다는 확인서를 써 줄 수 있겠느냐"고
하였더니, 권양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자필로 "그 영구
변호사와 8명이 제출한 고발장에 적혀 있는 본인이 당한
성고문 피해 내용은 진실임을 밝혀두고, 이후에 본인이 이와
다르게 얘기 한다면 이는 본인의 진의와 다른 것임을 미리
밝혀 둡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쓰고 무인을 찍어 위
조사위원들에게 교부하여 주어 그 자필확인서를 받았는데,
다) 교도소 당국에 "위 확인서에 찍힌 무인이 피구속자 권양의
무인에 틀림 없음을 확인하여 달라"고 하였던바, 교도소
보안과장 김권수가 "이 확인서는 교도소장의 집필허가 없이
작성한 것이라 외부로 네 보낼 수 없고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 그러니 네가 보관하고 있겠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법원이 요구하면 그때 제시하겠다"고 하면서 네주지 아니하여
가지고 나오지 못했음.

3. 위 조사위원들은 권양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동인 17:30 경 인천
지방검찰청에서 성고문 사건에 대한 수사진전 내용을 듣고 자
검사장과 성고문 사건 담당인 김수장부장검사를 만날려고 했으나
과부 제중이어서 만나지 못하고, 권양에 대한 공문서 위조 사건
만을 수사한 남충현 검사만을 만났는데, 남충현 검사는 "권양에
대한 공문서 위조 피의사건 수사도 중 6. 23. 오전 교도관으로부터

권양이 손데봉 변호사와 접견하는 자리에서 경찰한테 성고문 당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 했다는 전화보고를 받았다. 그 보고를 받고 그날 오후 권양을 불러 조사하였더니 경찰한테 성고문을 당했다고 해서 문귀동 형사를 불러 조사한바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래서 권양에게 성고문 사건은 문귀동 경찰과 권양 단둘이 있는 곳에서 한 것인데, 문귀동 경장이 부인하고 있어 증거가 약한데다가 권양과 권양 가족들의 명예와 장례를 위해서 문제 삼는 것보다는 덮어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권유한 일이 있다. 그런데 그뒤, 권양이 성고문 당하였다고 고소를 하고 권양의 변호인들이 고발을 하였다. 그리고 문귀동 형사는 권양을 무고, 명예훼손죄로 맞고소를 제기하여 그 성고문 사건에 대한 수사는 김수장 부장검사가 담당하게 되어 자기는 손을 떼게 됐다" 라고 말하였음.

4. 위 조사위원들은 성고문 사건이 "성고문을 당했다", "그것은 허위로서 무고다" 라고 맞서고 있는 권양과 문귀동형사 사이의 맞고소 사건이라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성고문을 당하였다는 부천경찰서 조사실을 둘러보고, 문귀동형사등 경찰측의 진술도 들어 봄 계획이었으나 7. 16. 인천지방법원청에서 성고문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바람에 조사할 필요가 없어져서 그만 두었음.

5. 조사위원들의 의견

가) 조사위원들이 권양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권양의 진술태도는 성실하고 진지하였으며, 그의 진술내용도 대학교 4년 정도의 처녀로서는 알 수도 없고 상상한 수도 없는, 경험자가 아니면 말 할수 없는 그러한 여러가지 구체적인 사실은

내용으로 하고 있어 "성고문을 당하였다"는 권양의 진술은 신실한 사실로 믿어지고 받아들여 졌음.

나) 검찰의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은 7. 16. 성고문 사건에 대하여 "문귀동 형사가 권양에게 성적모욕행위를 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다만 6. 6. 04:00 - 07:30 까지 사이 권양에게 재킷을 벗게한 후 티셔츠를 입은 가슴부위를 손으로 3,4회 짚어 박고, 6. 7. 21:00 - 23:00 까지 사이 권양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3, 4회 짚어박아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문귀동은 10년이상 경찰에 성실히 봉직하였고 잘 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기소유예 처분할 방침이라"고 그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는바, 위 검찰의 수사내용은(이 부분은 신문지상에 발표된 검찰의 부천서 사건 수사결과 발표문과 수사담당 부장검사와의 일문 일답을 근거로 하였음)

기) 문귀동이 처음에는 "성적모욕행위를 가하였다"는 권양의 고소내용을 전적으로 부인하면서 아리바이를 주장, 권양이 "성적모욕을 당했다"고 한 일시에는 조사를 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차차 권양의 주장 사실에 접근하기 시작, 권양이 당했다고 주장한 일시 장소에서 조사를 한 것이 사실이고, 권양의 젖가슴을 짚어 박은 것도 사실이라고 자백하기에 이른 점으로 보아 "성적모욕을 당했다"는 권양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문귀동의 진술은 젖가슴 부위를 짚어박은 사실만을 자백함으로써 성적모욕을 가한 이 사건의 핵심적인 행위들은 폐한하는 것으로 보이지

나) 일반형사 사법의 운영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1대1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가해자의 진술이

범행을 부인하였다가도 피해자의 진술을 일부시인 하는 등
관판질판할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 하고 있는 실정이며,

ㄷ) 권양의 본래의 피의 사실은 공문서 위조, 동행사
등이고, 그에 대하여는 모두 손쉽게 자백한 관계로
고문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새벽이나 밤늦게까지
조사할 필요도 없는 사건인데, 문귀동은 권양을
6. 6. 에는 새벽 4시부터 6시반까지, 6. 7. 은
토요일인데도 밤 9시부터 11시까지 조사하였으며,
사범경찰은 직무상 경찰리를 참여시키고 경찰관이
조사해야 하는등, 2인이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그를 무시하고 여자인 권양을 그것도 새벽과 깊은
밤에 단독으로 조사하는등 상식과 경험에 반하는
조사활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문귀동의 행동이
비정상적이었음을 엿볼 수 있는데도 위와 같은 점을
간과하고 성고문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점은 납득할 수 없으며,

ㄹ) 검찰이 인정한대로 문귀동이 권양의 젖가슴을 짚어
박는 폭행행위를 한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최근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 준비를 하고 있는 정부의
음직임이나 인권이 국내의 큰 문제로 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구속수사가 마땅한 일이라고 여겨
지는데도 기소유예 처분할 방침이라고 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생각한다.

6. 결 론

- 가) 본 협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성고문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내용은 추후도 의심할 여지가 없고 가해자의 변호는 전혀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고문 사실을 부인하는 듯한 결론을 내린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므로 명백한 재수사를 해야한다.
- 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검찰발표에서 인정한 가해자의 현재 나타난 범죄사실만으로도 구속기소하기에 충분하므로 검찰은 앞으로의 고문사건의 근절을 위하여 즉각 구속기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1986. 7. 21.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은 호